고 발 장

고 발 인 김경율

피고발인 이진아

2020. 10. 19.

고발인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종 휘, 김 태 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김경율

고발인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종휘, 김태환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 1004호(성수동1가, 서울숲IT캐슬) 전화: 02-6310-6633, 팩스: 02-6310-6634

피고발인 이진아

교발죄명 고발죄명 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금융실명거래및비밀

고 발취지

고발인 김경율(이하 '고발인'이라고 합니다)은 피고발인 이진아(이하 '피고발인'이라고 합니다)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각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혐의 가 인정될 경우 준엄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발인은 권력감시기구의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입니다.

피고발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2018. 6. 12.부터 2019. 10. 21.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로(중 제1호증의1 한국농어촌공사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한 자이며, 옵티머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옵티머스'라고 합니다) 사내이사인 고발외 윤석호(중 제1호증의2 옵티머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배우자이자, 옵티머스 및 관계회사의 주주입니다.

2.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주요사실

가.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발생

귀청은 202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으로 옵티머스자산운영의 대표이사인 김재현(이하 '김재현'이라 합니다), 이사 윤석호(이하 '윤석호'라 합니다) 등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2017. 12.경부터 운용하여 판매하였고,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 소개하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을 판매창구로 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에서 한국도로공사 등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 대부분을 비 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투자금 일부는 옵티머스 대표 개인 명 의 계좌로 편취하는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들 을 양산하였습니다.

나. 옵티머스와 관련한 하자치유문건 및 피고발인의 개입 정황

윤석호는 검찰에 옵티머스 내부문건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으로부터 받았다며 제출하였고, 이는 2020. 10.초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중 제2호중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

위 문건에는 펀드 부실이 일어난 원인과 경과, 향후 계획 등이 정리되어 있었으며, 문건에는 "라임 펀드 문제가 불거진 후 펀드의 조기 상환을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금감원 감사과정에서 옵티머스 부실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게이트 사건화'될 수 있

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문건의 공개로 정관계 인사의 실명들이 거론되며 <u>권력형 게이트</u> 사건으로서 여러 언론기관의 후속보도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후속보도를 통해 윤석호의 배우자인 피고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 옵티머스 주주명부에 피고발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 및 차명전환

2018. 2. 20. 작성된 옵티머스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피고발인이 옵티머스 보통주 100,000주를 보유한 주주라는 것이 확인됩니다(중 제3호증 2018. 2. 20.자 옵티머스 주주명부).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입니다>

<그림 1> 증 제2호증 2018. 2. 20.자 옵티머스 주주명부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웹인등록번호)	주식수	주식구)	1주의	납입금액	[단취
8 2 Can man 1 m mins	130,000			650,000,000	
이 에 전 621 B 2000	113,000			585,000,000	발문 등록
desires of the same of the sam	100,000		20	\$00,000,000	1
Service of the servic	100,000			500,000,000	4
170 48 mile on a new column				500,000,000	
(19-5) 75 mm a mm a 1 1 1 mm				500,000,000	
of 2 State and Design and the state of	100,000	文書文		500,000,000	即回
19 2 720mm 1 10 mm 101 114 water	67,000	17200000	5,000	335,000,000	7
701 1 100 1 100 1	65,000			325,000,000	4
Maria 160 a company of the same of the sam	50,000			250,000,000	A Mary
1860 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35,000			175,000,000	
70)22 - 1010 101 101	35.000			175,000,000	芍
11022 HILLS IN IN	15,000			75,000,000	
700414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000			25,000,000	-
70116. 11	160,000	전환상한 우선주		800,000,000	
71	1,175,000			5,875,000,000	

피고발인이 보유한 위 주식(지분율 9.85%)은 피고발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9. 10.경 고발외 김재현의 비서 A의 명의로 양도된 것으로 나오는데, A는 검찰 조사에서 "2019.말경 또는 2020.초경 김재현

대표가 '이 변호사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u>날짜를(청와대 근무이전으로) 소급해 내가 주식을 넘겨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u>했다, 주식 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피고발인의 옵티머스 주식이 차명 전환된 시점은라임 등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참고자료1. 靑행정관. 옵티머스 주식 숨기고 6월까지 민정실 근무_조선일보_2020. 10. 12.).

또한 옵티머스는 2017.경 자본금 부족으로 퇴출위기에 몰렸지만, 피고발 인이 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u>최소필요자금을 충족</u>하였던 것으로 판단됩 니다(**참고자료2**. 前 靑행정관, 퇴출위기 옵티머스 돈 넣어 되살려_동아일 보_2020. 10. 16.).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발인 및 배우자 윤석호는 피고발인 명의의 옵티머스 주식은 지분 분산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3. 청와대 전 행정관, 옵티머스 대표 돈 5억 받아 차명 투자_서울신문_2020. 10. 15.).

2) 피고발인의 금품수수 정황

피고발인은 옵티머스로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9. 7.경 휴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재직<u>중인 2020.2.경엔 300만 원</u> 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u>'올해 받은 3백만 원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u> 씨가 청와대 시계를 100개 구해달라'며 보낸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윤석호는 피고발인의 배우자로서 피고발인이 청와대에 재직하기 전까지 옵티머스로부터 월 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왔는데, <u>피고발인이 청와</u> 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부터 월 1,500만 원으로 보수가 올 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4. 아내가 靑 들어가자 옵티머스 월급 3배 올라_SBS_2020. 10. 12.).

나아가 김재현은 윤석호와 피고발인의 수 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해주었고, 피고발인은 2019 3. 26.부터 2019. 10. 16.까지 약 7개월 간 옵티머스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합계 3,00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참고자료5. 옵티머스 대표, 靑 행정관 부부 빚 갚아주고 생활비 챙겨줘 TV조선 2020. 10. 16.).

3) 기타 피고발인의 옵티머스 관련 정황

위와 같이 피고발인이 옵티머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정황 외에도, 배우자 윤석호는 옵티머스를 포함해 9개 관계사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피고발인은 페이퍼컴퍼니인 셉틸리언 주식 지분 50%를 보유하였고, 2019. 3.~10.경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이 단순히 배우자인 윤석호를 위해 명의만 차용해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 등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자이며, <u>윤석호가 배우자인 피고발인을 언급하며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를</u> 예견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을 통해 청와대나 금감원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 사정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참고자료6. 옵티머스 윤석호, 청와대 아내 통해 사태 막겠다 했다_중앙일보_2020. 10. 15.).

또한 피고발인은 2018. 6. 12.부터 2019. 10. 21.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 원을 투자의 안전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투자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발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의 중요 관여자인 피고발인의 혐의를 밝히고, 이를 통해 옵티머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고발혐의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관련규정 및 법리

- (1) <u>형법 제129조 제1항</u>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u>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u> 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수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동 조항 <u>제2호</u>는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이상,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 사이의 구체적인 실행행위 분담내용, 그들 사이에 수수한 뇌물의 처분, 분배 내용 등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3) 또한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건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 807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4) 대법원은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2001도9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발인의 신분 및 직무관련성

피고발인은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한 자로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은 명백합니다.

민정수석실은 소위 5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인 금융감독원장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들이 기망행위를 이어갈때 가장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곳은, 검찰 수사 또는 금감원 조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무마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사실이며, 옵티머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피고발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u>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u>할 때 피고발인에게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은 명백합니다.

2)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의 수수

주요사실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배우자 윤석호는 옵 티머스의 이사로서, 피고발인이 청와대에 재직하기 전까지 옵티머스로부터 월 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왔는데, <u>피고발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부터 월 1,500만 원으로 보수가 올랐다</u>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인 피고발인의 배우자인 윤석호는 옵티머스로부터 피고발인의 재직기간인 약 8개월동안 부당하게 8,000만 원(=(1,500만원-500만원)×8개월)을 수령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법리에 비추어보면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성립하는 바,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윤석호가 위 금원을 수수

하였다면, 피고발인이 위 금원을 수수한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익자 중 정부 및 여당관계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u>김재현은 검찰 조사에서 정부 및 여</u> 당관계자는 피고발인을 지칭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 2> 증 제2호증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

- 신규 설정 일정 및 자금 회수 일정등을 "법인들"에서 진행, 무난한 정상화를 예상했으나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이슈화될 경우
 - ▷ 당사와 "법인들"의 정상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준 당사 고문들 및 "법인들"의 자무역인 분들이 부리되어 게이트 사건화 우려
 - D 이혁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보니 정상화 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본질과는 다르게 권력형 비리로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나아가 윤석환은 옵티머스의 자금 압박이 시작되던 2020. 4.경 경영진에 "청와대에 있는 아내에게 얘기해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전술한 참고자료6 참조), 이러한 발언의 취지에 비추어 금융감독 원 등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피고발인의 직무와 배우자가 수수한 금원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음이 넉넉히 추단됩니다.

다. 소결

이상의 이유와 같이 피고발인의 배우자인 윤석호가 옵티머스로부터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매월 1,000만 원의 초과 보수를 수령한 것은 옵티머스 사건 진행 현황 및 무마에 대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피고발인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이므로, 피고발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됨이 명백합니다.

4. 고발사항 (2)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u>제3조 제3항</u>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u>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u><u>의 벌급</u>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목적'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 서류에 대한 거짓 기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등록대상재산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비롯한 제재를 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자윤리 법에서 정한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상태를 은폐하여 거짓으로 재산등록 을 하기 위한 목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 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탈법목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금융실명법 위반

피고발인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서 3~5급의 별정직 공무원이며, 공직자 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옵티머스 주식 100,000주를 민정 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기 전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의 비서 명의로 차 명전환 하였습니다.¹

¹ 피고발인이 보유한 옵티머스 주식 100,000주는 옵티머스가 2018.6.12. 을 기준일로 하여 실행한 20:1의 감자결의에 의해 5,000주로 변환되었습니다만 여기서는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그냥 100,000주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차명전환 시점이 정확하지 않으나, 김재현 대표의 비서인 A의 진술로 미루어 소급작성 여부도 명확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상태를 은폐하여 거짓으로 재산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 래"를 한 것입니다.

가사 피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발인 명의의 옵티머스 주식은 <u>지분 분</u>
산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김재현의 범죄수익은
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u>불법재산의 은닉 목적으로 금융실명</u>
법을 위반한 김재현의 공범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옵티머스 주식 100,000주가 피고발인의소유라면 김재현의 비서 명의로 차명전환을 한 행위는 금융실명법위반의정범에 해당하며, ②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김재현의금융실명법위반의 공범에 해당하는 바, 둘 중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실명법위반의 해당함은 명백합니다.

5. 수사시 요망사항

(1) 300만원의 사용용도 확인

피고발인은 옵티머스로부터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u>재직 중인 2020. 2.경</u> 엔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 '올해 받은 3백만 원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씨가 청와대 시계를 100개 구해달라'며 보낸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고발인이 옵티머스로부터 지급 받은 300만 원이 청와대 시계 구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의율

피고발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예비적으로 이를 의율 하여 피고발인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발인에 대한 여죄확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옵티머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정황 외에도, 배우자 윤석호는 옵티머스를 포함해 9개 관계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고, 피고발인은 페이퍼컴퍼니인 셉틸리언 주식 지분 50%를 보유했으며, 2019. 3.~10.경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등 재되어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2018. 6. 12.부터 2019. 10. 21.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 원을 안전성 및 투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투자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여죄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6. 결어

이상의 이유와 같이 피고발인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로 추정되는 바, 피고발인에 대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정권의 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면, 대기업과의 정경유착이 문제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사모펀드 비리라는 금융자본 비리가 연일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사기 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로서그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본 사건을 통

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옵티머스 사건 및 라임펀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것인지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바,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증 제1호증의1 한국농어촌공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1호증의2 옵티머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2호증 펀드하자치유 관련 문건

증 제3호증 2018. 2. 20.자 옵티머스 주주명부

참 고 자 료

- 1. 靑행정관. 옵티머스 주식 숨기고 6월까지 민정실 근무_조선일보_2020. 10. 12.
- 2. 前 靑행정관, 퇴출위기 옵티머스 돈 넣어 되살려_동아일보_2020. 10. 16.
- 3. 청와대 전 행정관, 옵티머스 대표 돈 5억 받아 차명 투자_서울신문_2020. 10.15.
- 4. 아내가 靑 들어가자 옵티머스 월급 3배 올라_SBS_2020. 10. 12.
- 5. 옵티머스 대표, 靑 행정관 부부 빚 갚아주고 생활비 챙겨줘_TV조선_2020. 10.16.
- 6. 옵티머스 윤석호, 청와대 아내 통해 사태 막겠다 했다_중앙일보_2020. 10. 15.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통 1. 고발대리위임장

2020. 10. 18.

고발인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종 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